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9
----------	-----

2019. 7. 19.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임기중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19년 7월 1일
- 다. 회부일자: 2019년 7월 3일
- 라. 상정일자: 2019년 7월 10일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임기중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수업료 면제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학생 전출·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같이 일할계산으로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대상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안 제4조, 부칙 제2조)
- 학생 전출·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할계산으로 하되,

수업료를 월할계산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전입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 방법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3항 및 안 제6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정책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2021학년도 1학기까지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학생 전출·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같이 일할계산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고등학교 입학금은 2017. 12. 15. 조례 개정으로 이미 면제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관련법안인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해당 법안이 적시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재원 대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요약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54	286	410	401	406	415	1,972
보통교부금	40	136	195	191	193	197	952
특별교부금	14	0	0	0	0	0	14
증액교부금	0	136	195	191	193	197	912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0	14	20	20	20	21	9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를 “전입하는 날부터의”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를 “전출하는 날까지의”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를 “전입하는 날부터의”로 하며, 같은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제4조제5항 중 “입학금을”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로 하며, 같은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를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를 “전출하는 날까지의”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수업료 면제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3.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수방법) ① ~ ② (생 략) ③ (생 략)</p> <p>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의 급지가 전출학교의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p> <p>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단서신설></p>	<p>제3조(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1. ----- ----- ----- ----- ----- 전입하는 날부터의 ----- -----.</p> <p>2. ----- ----- ----- 전출하는 날까지의 ----- ----- 전입하는 날부터의 ----- ----- .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p>
<p>제4조(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 ④ (생 략) 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단서신설></p>	<p>제4조(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입학금 및 수업료를 -----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 을</p>

	<p><u>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제6조(수업료 · 입학금의 반환)</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u>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u>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p> <p>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u>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u>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p> <p>③ ~ ④ (생 략)</p>	<p>제6조(수업료 · 입학금의 반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u>전출하는 다음 달부터의</u> -----.</p> <p>2. ----- ----- <u>전출하는 날까지의</u> ----- ----- <u>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학년도마다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국립 고등학교에서 국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국립 고등학교에서 공립·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제1항에 따른 수업료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산정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입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할 수업료를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3.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국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출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하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4. 국립 고등학교는 학생이 2회 이상 전학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수업료 면제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 기타 학생 전출·전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수업료 면제조항 정비

3. 관련조문

-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항의 수업료 면제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3.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단계적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나. 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54	286	410	401	406	415	1,972

다. 재원조달방안

연 도	재 원 조 달
2019. 2학기	특별교부금 25%, 보통교부금 75%
2020.~2024.	증액교부금 47.5%, 보통교부금 47.5%, 지방자치단체전입금 5%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6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496,879	△20,099,137	△28,755,824	△28,085,274	△28,611,418	△29,394,341	△138,442,873	
자체수입	△3,496,879	△20,099,137	△28,755,824	△28,085,274	△28,611,418	△29,394,341	△138,442,873	
세 출	1,851,664	8,506,467	12,263,089	12,042,608	11,984,336	12,152,139	58,800,303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1,851,664	8,506,467	12,263,089	12,042,608	11,984,336	12,152,139	58,800,303	
재원 조달	5,348,543	28,605,604	41,018,913	40,127,882	40,595,754	41,546,480	197,243,176	
의 존 재 원	소 계	5,348,543	28,605,604	41,018,913	40,127,882	40,595,754	41,546,480	197,243,176
	보통교부금	4,011,408	13,587,662	19,483,984	19,060,744	19,282,983	19,734,578	95,161,359
	특별교부금	1,337,135	-	-	-	-	-	1,337,135
	증액교부금	-	13,587,662	19,483,984	19,060,744	19,282,983	19,734,578	91,149,95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	1,430,280	2,050,945	2,006,394	2,029,788	2,077,324	9,594,731
자 체 수 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